
2021학년도 경기대학교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 통보 (1단계 총괄)

목 차

1. 제보의 내용.....	2
2. 조사(검증)의 대상이 된 연구물.....	2
3. 연구진실성 검증 진행경과.....	4
4.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의 근거.....	6
5.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결과.....	9
6. 차후 진행 방향.....	26



경기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1. 제보의 내용

가. 제보자 : 뉴스타파 보도(홍여진 기자)

나. 제보개요

- 1) 경기대 관광문화대학 소속 교수들이 주축인 학술단체 두 곳(관광경영학회, 한국관광산업학회)에서 논문 게재율을 조작하고 심사위원들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수들의 논문의 내용에서도 표절, 데이터 조작 등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상당수 발견함.
- 2)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서류 조작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경기대 교수 두 명은 해당 학회에 임원으로 재임 기간 게재한 논문 실적으로 지난해 경기대 전임교원으로 임용, 학회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함.

다. 제보 및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 검증 요청 경과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들이 관여한 관광경영학회와 한국관광산업학회의 학술지인 “관광경영연구”와 “Tourism Research”에 논문 투고 및 게재 과정에서 비리 의혹 보도

- 1) “논문공장의 영업비밀1”(2021.06.23.) : 뉴스타파 홍여진 기자
- 2) “논문공장의 영업비밀2”(2021.07.01) : 뉴스타파 홍여진 기자

2. 조사(검증)의 대상이 된 연구물

가. 뉴스타파 보도건 : 피조사자 총6명, 논문25건

나. 검증 대상

1) 피조사자 : 총6명

피조사자	뉴스타파	주요 연구부정 행위 의심 내역
[Redacted]	4	중복게재, 출처표기 오류, 논문투고규정위반
	1	표절, 데이터조작
	4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5	표절, 데이터조작, 중복게재
	8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3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소계	25	

2) 검증 대상 논문 내역 : 총25편

피조사 대상자	연번	논문	게재지	게재 연도	연구부정의심 내용
[Redacted]	1	여수엑스포장의 대기시간이 방문객 감정반응과 개최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연구재단지원)	관광경영연구	2013.09	중복게재
[Redacted]	2	관광이벤트 종사자의 성격이 직업만족 및 경력변경의도에 미치는 영향	Tourism Research	2018.03	중복게재
[Redacted]	3	대학축제의 진단과 대안모색	관광경영연구	2016.03	출처표기가 신문, 인터넷 사이트이나 검색할 날자 없음. 인터넷사이트 연결 안되는 경우도

					있음. 논문투고규정위반
	4	전시박람회 서비스스케이프와 감정 반응간의 관계 연구 : 관 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2012. 10	중복게재
	5	모바일 관광목적지 관광정보 에 신뢰성이 관광목적지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목적지 이미지와 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경영 연구	2018	표절률 55%, 14페이지동일 데이터조작 (설문연도:2013년→ 2017년)
	6	항공서비스 전공학생의 전공 선택 동기가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및 취업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 연구	2020. 11	자기표절, 중복게재
	7	게스트하우스 인프라 확충 연 구 : 건축적 특성을 중심으로	관광경영 연구	2018. 07	부당한 저자표시
	8	중국 크루즈 관광객 기항지 쇼핑 속성이 쇼핑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 분석 : 쇼핑동기요인의 조절효과를 중 심으로	관광경영 연구	2017. 11	부당한 저자표시, 자기표절
	9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 변화에 따른 여행사 전략 연구- 도매여행사를 중심으로	관광경영 연구	2010. 12	부당한 저자표시, 자기표절
	10	호텔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공 중 관계성과 호텔이미지에 미 치는 영향	관광경영 연구	2015	표절
	11	국가이미지와 의료관광서비스 품질이 의료 관광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 중국 의료관광객 연령집단의 조 절효과	관광레저 학회	2018. 06	데이터조작
	12	호텔조직에서 리더십 스타일 이 갈등관리 전략과 팀 효율 성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 연구	2016. 03	표절
	13	관광자의 감각추구성향과 관 광중독, 지각된 관광제약의 관 계 연구	관광경영 연구	2015. 07	중복게재, 데이터오류
	14	호텔 가격공정성이 브랜드 자 산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 연구	관광경영 연구	2012. 06	데이터 누락
	15	호텔 종사원의 감성역량이 소 진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 연구	2019	중복게재, 임용시 실적
	16	관광관련 전공 대학생들이 지 각하는 영어학습동기가 학습 몰입 및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	Tourism Research	2018	중복게재, 임용시 실적
	17	교육서비스품질이 학습참여 및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관광경영 연구	2018	중복게재, 임용시 실적
	18	호텔종사원이 지각하는 고용 불안정성이 이직의도와 조직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Tourism Research	2018	중복게재, 부당한저자표시, 임용시 실적
	19	카지노 방문동기가 카지노선 택속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IPA를 활용한 카지노선택속성 의 차이 연구	Tourism Research	2018	중복게재, 임용시 실적
	20	호텔 종사원의 성취목표지향 성과 경력몰입의 관계에서 자 기주도 학습능력의 매개효과	관광경영 연구	2018	중복게재, 임용시 실적
	21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회복 탄력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 구: 관광관련전공 대학생들 중 심으로	Tourism Research	2017	중복게재, 임용시 실적
	22	호텔종사원이 지각하는 네트 워킹 행동이 조직몰입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원 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Tourism Research	2020	중복게재
	23	COVID-19에 의한 관광산업	관광경영	2020	부당한 저자표시

		현황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제자인중국유학생주위 동의없이주저자로게재)
	24	크루즈관광객의 선상이벤트 참가동기가 정서적관여도와 고객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 연구	2018	중복게재, 자표시, 임용시 실적
	25	인바운드 의료관광 추세와 대응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중국인 중심으로	관광경영 연구	2020	표절

3. 연구진실성 검증 진행경과

가. 본조사위원회 검증 조사 기간 : 2021.10.14. ~ 2022.11.30

나. 조사 내용

- 1)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2021년 07월 21일]
-예비조사위원회 실시 결의, 교내 3명 위촉
- 2) 예비조사위원회 총 2회 실시
-본조사위원회 실시 필요 결의
- 3)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2021년 08월 19일]
-본조사위원회 구성 결의, 총6명(교내 3명, 교외 3명)
-피조사자 6명, 검증대상논문 63건
- 4) 제1차 본조사위원회 개최 [2021년 10월 14일]
-본조사위원장 선출, 조사 범위 및 업무 분담 설정
-본조사위원 2인 추가 요청 의결
- 5)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2021년10월25일]
-본조사위원 2인 추가 위임 의결, 총8명(교내 3명, 교외 5명)
- 6)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2021년10월29일]
-교육부 제보건의 합병으로 인한 본조사위원(교내위원) 1인 제척 의결
-본조사위원(외부위원) 1인 추가 위임 의결, 총8명(교내 2명, 교외 6명)
-피조사자 7명, 검증대상논문 80건
- 7) 제2차 본조사위원회 개최 [2021년12월09일]
-본조사위원회 일정 3개월 연장 요청
-조사를 1단계(연구윤리위반 행위 적시된 피조사자 6명, 논문 25건),
2단계(부실한 논문 심사로 의심되는 피조사자 3명, 논문 55건)으로 분리하여 검증 의결
- 8)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2021년12월20일]
-본조사위원회 일정 3개월 연장 의결(1차 연장)
- 9) 제3차 본조사위원회 개최 [2022년01월05일]
-본조사 1단계 검토의견 공유
-피조사자 대면소명 일정 확정
- 10) 제4차 본조사위원회 개최 [2022년01월24일]
-피조사자 대면소명 실시 : 2인 참석
- 11) 제5차 본조사위원회 개최 [2022년01월25일]
-피조사자 대면소명 실시 : 4인 참석

- 12) 제6차 본조사위원회 개최 [2022년 02월 14일]
 - 본조사 1단계 검토의견 공유
- 13) 제7차 본조사위원회 개최 [2022년 03월 17일]
 - 본조사 1단계 위원별 판정 의견 공유
 - 위원별 판정 의견에 대한 근거 사유 제시 요청
 - 본조사위원회 일정 6개월 연장 의결
- 14)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2022년03월28일]
 - 본조사위원회 일정 6개월 연장 의결(2차 연장)
- 15) 본조사 1단계 의견 취합 및 보완 [2022년03월30일 ~ 2022년07월29일]
 - 피조사자 추가 제출 자료 반영한 의견 제시 요청
 - 본조사 1단계 의견에 대한 상세 근거 제시 요청
 - ※본조사 2단계 검토 병행 진행
- 16) 제11차 본조사위원회 개최 [2022년07월29일]
 - 본조사 1단계 의견중 누락 부분에 대해 추가 요청
 - 의견에 대한 상세 근거 제시 요청
- 17) 본조사 1단계 의견 공유 및 보고서 검토 [2022년08월16일 ~ 2022년10월08일]
 - 본조사위원별 보완 제출 의견 공유
 - 본조사 1단계 결과보고서 초안 공유 및 검토
 - 본조사위원회 일정 6개월 연장 요청(본조사위원장)
- 18)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2022년10월01일]
 - 본조사위원회 일정 6개월 연장 의결(3차 연장)
- 19) 본조사위원회 제1차~제5차 소위원회 진행 [2022년10월09일 ~ 2022년11월13일]
 - 피조사자별 본조사위원 의견 검토 및 조정작업
 - 1단계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
- 20) 제12차 본조사위원회 개최 [2022년11월16일]
 - 본조사 1단계 결과보고서 최종 검토 및 일부 이견 조정
 - 1단계 검증 위원중 1인의 검증 제외 요청 접수 및 반영 처리
(1단계 검증 위원 조정 : 총8명 -> 총7명(교내 1명, 교외 6명))
- 21) 본조사위원회 제6차 소위원회 [2022년11월27일]
 - 본조사 1단계 결과보고서 최종 확정
- 22) 1단계 결과보고서 확인 및 서명작업 [2022년11월29일 ~ 2022년11월30일]
 - 본조사 1단계 검증 본조사위원 총7인 확인 및 서명 완료
- 23)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2022년12월15일]
 - 본조사 1단계 결과보고서(총괄) 검토, 보고서 내용 보완 지시 및 부결처리
- 24)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2023년01월04일]
 - 본조사 1단계 결과보고서(총괄) 재검토 및 승인 의결
- 25) 본조사 1단계 결과보고서 내부 결재 완료 [2023년01월13일]
- 26) 본조사 1단계 결과보고서 통보 [2023년01월26일]
 - 제 보 자 : 뉴스타파 홍여진 기자
 - 피조사자 : 총6명
 - ※ 2023년 설연휴로 인하여 통보 일정이 다소 지연됨

4.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의 근거

■ 본조사위원회 검증의 절차와 과정

- ① 제보 내용 검토
- ② 제보와 관련한 참고 자료 분석(해당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 교육부 및 경기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등)
- ③ 피조사자 대상 서면 소명 및 대면 소명 검토
- ④ 검토가 필요한 추가 자료 요청 및 검토
- ⑤ 본조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쟁점 사항 논의
- ⑥ 본조사 위원 개별 의견 제시
- ⑦ 본조사위원장 종합 및 최종 보고서 초안 작성
- ⑧ 소위원회를 통한 최종 검토
- ⑨ 본조사위원회 최종 확정

■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한 규정 및 근거

가. 규정

-경기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8. 7. 17)」과 제보 논문이 실린 학술지를 발행한 학회의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규정도 참고함.

- ① 경기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별첨 8-1.경기대학교-연구윤리규정.pdf)
- ②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별첨 8-2.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pdf)
- ③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한국연구재단)
(별첨 8-3.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pdf)

나. 근거

①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결과를 출처표기 없이 활용하면서 자신의 것처럼 하는 경우

② 중복게재(자기표절) 및 부당한 중복게재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은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의 일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후속 연구에서 재활용하면서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후속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는 것으로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

-석·박사 학위 논문에 있는 내용을 요약·발췌 또는 보완하여 동일 내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전문 학술지 논문 게재 시, 이 학위 논문에 대한 출처표기(사사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중복게재로 판단하지 않음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에서 학위 논문 재활용 시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당시 학계의 관행에 고려하여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음).

-그러나 2015년 11월 3월 이후 게재된 논문인 경우에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부당한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전공분야 본조사 위원들 대부분이 중복게재를 최근 학계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연구부정행위로까지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연구부적절행위로 함.

-석·박사 학위 논문의 내용을 출처표시 없이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활용하여 업적 인정이나 연구비 지원 등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서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단하지 않음 (“부당한 중복게재”가 연구부정행위로 공식화된 것은 2015년 11월 3일 이후이므로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단하는 경우는 2015년 11월 3일 이후의 연구물에서 허용되지 않은 중복게재를 한 후, 이를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로만 한정함**).

-그러나 전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피조사자의 선행 연구 내용을 후속 전문 학술지에서 재활용하였음에도 적절하게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마치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했을 때에는 중복게재로 판단함(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나 경기대학교의 「연구윤리 규정」에서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로 공식적으로 유형화하지 않았으므로 중복게재(자기표절)로 제보된 것에 대해서는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에 적용하여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함.)

③ 부당한 저자표시

-석·박사 학위 논문에 있는 내용을 단지 요약·발췌 또는 보완하였다고 해도 중요한 부분에서 동일 내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전문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 시, 학위 논문의 저자인 지도 학생이 제1저자, 그 학생의 지도교수가 공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한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봄.

-그러나 지도교수 또는 제3저자가 단독 저자로 오는 경우, 제3자 또는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고 지도학생이 공동저자로 오는 경우는 부당한 저자표시로 판단함.

-비록 석·박사 학위 논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전문 학술지 논문이 나왔지만 이 양자 간에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고, 이를 지도교수 또는 제3자가 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 또는 공저자로 올 수 있음.

④ 연구부정행위 검증 범위

-1차적으로 제보된 연구부정행위 의혹 사안을 중심으로 검증 및 판단하였고,

-본조사위원회가 동일한 사안을 검증하는 중에 제보되지 않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검증 대상에 포함시킴

5.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 결과

가. 논문별 종합판정 내역(1단계 전체)

논문(1)	여수 엑스포장의 대기 시간이 방문객 감정반응과 개최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게재지	게재 시기	저 자	제보의 내용
관광경영 연구	2013 .09	1저자: [REDACTED]	-중복게재
판정결과	상세의견 종합		
중복게재 아님	<p>-두 비교 논문은 한 번의 동일 시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각각의 논문으로 발표했음. 그렇지만 연구 모형, 분석 방법, 결과, 시사점 도출이 상이함.</p> <p>-제보된 연구부정행위 유형은 '중복게재'이나 경기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에 의하면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 범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부당한 중복게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사안은 중복게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기에 부당한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음.</p> <p>-따라서 경기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4조1항8호에 의거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바, 본조사위원 절대 다수가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p>		
논문(2)	관광 이벤트 종사자의 성격이 직업만족 및 경력변경 의도에 미치는 영향		
게재지	게재 시기	저 자	제보의 내용
Tourism Research	2018 .03	1저자 : [REDACTED] 2저자 : [REDACTED]	-중복게재
피조사자의 역할	학위논문 지도교수		
판정결과	상세의견 종합		
중복게재 아님	<p>-지도학생의 학위 논문을 재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함에 있어 2015년 11월 3일에 개정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해 출처표기가 보다 엄격해지고 있지만, 학문 분야별로 학위논문을 공식적인 출판물로 보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 기준을 무조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함.</p> <p>-학위논문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본 사안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연구윤리 규정에서도 명확한 가이드가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학계에서 통용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본 사안의 경우, 비록 학위논문에 대한 출처표시 없이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한 것은 연구부적절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지도학생이 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로 표시되고 있어 이것이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으로서의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p> <p>-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중복게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정함.</p>		

				-다만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학위논문의 재활용에 대한 출처표기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최근 학계의 동향을 고려할 때 향후 학위논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정확히 할 것을 권고함.
논문(3)		대학 축제의 진단과 대안 모색		
게재지	게재 시기	저 자		제보의 내용
관광경영연구	2016 .03	1저자: [REDACTED]		출처표기가 신문, 인터넷 사이트이나 검색한 날짜 없음. 인터넷 사이트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음. 논문 투고 규정 위반
판정결과		상세의견 종합		
연구부정행위 아님		<p>-피조사자도 인정하였듯이, 참고문헌에서의 일부 신문 및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출처표기를 누락하였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은 인정됨.</p> <p>-이것은 출처표기의 부정확성(연구부적절행위) 또는 논문 투고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지만 연구부정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움.</p> <p>-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본 건은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정함.</p>		
논문(4)		전시박람회 서비스 스케이프와 감정 반응 간의 관계 연구 : 관여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게재지	게재 시기	저 자		제보의 내용
Tourism Research	2012 .10	1저자 [REDACTED] 2저자 [REDACTED] 3저자 [REDACTED]		-중복게재
피조사자의 역할		[REDACTED]의 논문 지도교수 ([REDACTED]의 논문 지도교수이기도 함)		
판정결과		논문별 종합판정		
-중복게재 아님		<p>-본 사안은 중복게재에 대한 의혹 제기이므로 1차적으로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 3저자의 역할이 저자로서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였음.</p> <p>-중복게재 여부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와 피조사자의 대면 소명을 종합해 볼 때, 제자의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한 것으로, 비록 학위논문에 대한 출처표시가 없지만 본 사안 논문이 발표된 2012년 당시 학계의 학위논문의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과 관련한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과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엄격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중복게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판정함.</p>		
-부당한 저자표시 아님		<p>-부당한 저자표시 여부와 관련하여 제 3저자인 [REDACTED]의 해당 학술지 논문에서의 기여(역할)는 제3저자의 확인서를 통해 통계 부분에서의 검토 및 의견 제시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허성란이 저자로서 역할이 없음에도 제 3저자인 공저자로 등재된 것은 아니므로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부당한 저자표시가 아니라</p>		

		고 판단하였고, 일부는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본 사안은 최종적으로 부당한 저자표시가 아닌 것으로 판정함.	
논문(5)		모바일 관광 목적지 관광 정보에 신뢰성이 관광 목적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 목적지 이미지와 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게재지	게재 시기	저자	제보의 내용
관광경영 연구	2018.05	1저자 ██████████ 2저자 ██████████ 3저자 ██████████	-표절을 55%, 14페이지 동일, -데이터 조작 : (설문연도: 2013년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 2017년 8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피조사자의 역할		주저자 ██████████의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장	
판정결과		상세의견 종합	
-데이터 조작		<p>-본 사안의 제보 내용은 데이터 조작과 표절 여부이지만, 본조사위원회에서는 추가적으로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서는 중복게재 여부를,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지적 기여가 없어 보이는 교신저자 및 제3저자가 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한 저자표시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였음. 여기서 피조사자는 제1저자의 학위 논문 작성 당시, 지도교수가 아닌 심사위원장으로 역할을 하였다고 소명하였지만, 일반적으로 학위 논문의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에서 바람직한 저자표시는 지도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저자로 표기되는 것을 고려할 때 제3저자로서 충분한 기여가 확인되지 않았음.</p> <p>-데이터 조작과 관련하여, 피조사자는 설문 연도의 오기를 단순 실수라고 소명하였지만, 그 소명 근거가 명료하지 않으며 오래 전에 수집된 설문 자료를 두고 시점에 맞춰 설문 조사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키보드의 위치 등으로 볼 때 단순 실수라면 이러한 연도 및 월 표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연한 실수의 오타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본조사위원 절대 다수가 데이터 조작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정함.</p>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함		<p>-둘째, 부당한 저자표시와 관련하여, 본 사안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상당 부분을 재활용한 것으로 해당 석사 논문과의 의미 있는 차별화가 없음에도 제2저자를 교신저자로, 피조사자를 제3저자로 등재한 것임. 이에 대해 본조사위원 일부는 의견 표시를 하지 않았고 절대 다수는 저자로서 기여가 없는 제2저자를 저자로 등재하였으므로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본 사안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함. 비록 피조사자인 이재곤은 본 사안 논문에서 저자의 순서를 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교신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공동 저자로서 부당한 저자표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p>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음		<p>-셋째,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본 사안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논문을 상당 부분 재활용하여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학위 논문에 대한 출처표시가 있으므로 본조사위원 7인 중 5인이 중복게재(자기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2인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아 다수결 원칙에 따라 본 사안은 최종적으로</p>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함.			
논문(6)		항공 서비스 전공학생의 전공 선택 동기가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및 취업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게재지	게재 시기	저 자	제보의 내용
관광경영 연구	2020 .11	1저자 : ██████████ 2저자 : ██████████	-자기표절 -중복게재
피조사자의 역할		주저자의 박사과정 지도교수	
판정결과		상세 의견 종합	
-중복게재 (자기표절)		-본 사안 논문에 대한 제보는 중복게재 여부였음. 이와 관련하여 본 사안 논문은 제1저자 ██████████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하여 학술지에 게재할 때 그 학위논문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며, 특히 동일한 석사논문을 요약하여 나온 2019년 12월에 기 발표된 선행 논문(관광경영연구 제23권, 제7호)의 내용을 재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출처표시를 하지 않아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저자표시에 관련해서는 제보 사항은 아니었으나 본조사위원회의 자체 검증 과정에서 발견한 것임. 피조사자는 본 사안 논문의 게재 과정에서 연구 모형을 잡아주고 논문 작성 방향에 대해 지도하여 교신저자로 등재되었다고 소명하였으나, 제1저자의 석사과정 지도교수도 아니었고 심사위원으로서 논문 지도를 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교신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지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없어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함.	
논문(7)		게스트하우스 인프라 확충 연구 : 건축적 특성을 중심으로	
게재지	게재 시기	저 자	제보의 내용
Tourism Research	2018 .07	1저자 : ██████████ 2저자 : ██████████ 3저자 : ██████████	부당한 저자표시
피조사자의 역할		교신저자 (논문지도교수 아님, 논문 심사위원 아님, 논문 심사위원장 아님)	
판정결과		상세 의견 종합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함		-본 사안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부분 요약하여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피조사자가 제2저자(교신저자)로서, 제3저자인 ██████████이 공동저자로서 실질적인 지적 기여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저자로서 실질적인 지적 기여가 없는 사람을 저자로 등재하였으므로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또 다른 관점, 즉 넓은 의미의 표절에서 보면, 저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저자를 부여함으로써 제1저자의 연구 내용을 제2, 3저자가 한 것처럼 하여 무단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표절로 보는 관점도 있지만 본 사안에서는 제보 받은 부당한 저자표시 여부에 초점을 두어 판정하였음.	

논문(8)		중국 크루즈 관광객 기항지 쇼핑 속성이 쇼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쇼핑 동기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게재지	게재 시기	저 자	제보의 내용
관광경영연구	2017 .11	1저자 : ██████████ 2저자 : ██████████ 3저자 : ██████████	-부당한 저자표시 -자기표절
피조사자의 역할		(██████████ 석사학위) 논문심사 위원	
판정결과		상세 의견 종합	
-부당한 저자표시		-본 사안은 제3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대부분 요약하여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석사학위 논문의 저자가 제1저자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3저자가 제1저자로, 심사 위원이었던 피조사자가 제2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제3저자는 통계처리에 대한 지원, 피조사자는 심사위원으로 논문을 지도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이들 각자가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지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저자로서 실질적인 지적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로 등재된 본 사안에 대해 본 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중복게재 (자기표절) 아님 (연구부적절 행위)		-중복게재(자기표절)와 관련하여서는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로, 비록 2015년 이후부터 학위논문의 재활용 시 출처표시를 하도록 하는 경향이 강화되기도 하였지만 학위논문에 대한 출처표시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복게재(자기표절)라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하고 생각하여 본 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중복게재(자기표절)에 해당하지 않지만 연구부적절행위라고 최종 판정하였음.	
논문(9)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 변화에 따른 여행사 전략 연구-도매 여행사를 중심으로	
게재지	게재 시기	저 자	제보의 내용
관광경영 연구	2010 .12	1저자 : ██████████ 2저자 : ██████████	부당한 저자표시, 자기표절
피조사자의 역할		논문심사위원장 (지도교수는 아님)	
판정 결과		상세 의견 종합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함		-제1저자의 지도교수가 아닌 피조사자가 제2저자로 등재된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비록 제1저자의 요청에 의해 당시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장으로 학술지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도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소명과 제1저자의 확인서가 제출되었지만 제2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지적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제시가 미흡하므로 저자로서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로 등재되었기에 본조사 위원 7인 중 4인이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3인은 부당한 저자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다수결 원칙에 따라 최종적	

		으로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중복게재 (자기표절) 아님 (연구부적절행위)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상당 부분을 재활용하여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로, 학위 논문의 인용 부분에 대한 출처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이 당시의 학계에서는 학위논문의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에 따른 출처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조사위원회에서 정한 중복게재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중복게재(자기표절)가 아니며,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논문(10)		호텔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공중 관계성과 호텔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게재지	게재 시기	저 자	제보의 내용
관광경영연구	2015 .09	1저자 : ██████████ 2저자 : ██████████ 3저자 : 최승민	- 표절 - ████████이 박사학위 논문을 출처표기 없이 표절
피조사자의 역할		██████████와 관계 없음(박사학위 논문 심사과정 및 지도에 관여하지 않음)	
판정결과		상세의견 종합	
-표절		-본 사안 논문은 제2저자인 ██████████의 박사논문의 기초가 되는 학술지 논문으로 ██████████. 2)의 박사논문과 비교할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동일하고 상당 부분의 문장이 일치함에도 ████████의 박사논문에 대한 출처표기가 없어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표절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정함.	
-부당한 저자표시		-제2, 3저자는 모두 피조사자의 지도학생이지만 ████████는 지도학생도 아니고, ████████의 박사논문 심사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심사위원의 역할도 담당하지 않았음. 이러한 관계에서 피조사자가 본 사안 논문에서 제1저자로서 어떠한 실질적인 지적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제2, 3저자의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지적 기여에 대한 증빙도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저자로서 기여가 없는 사람들을 저자로 등재한 것이라고 판단함. -본 사안은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한 제보가 없었으나 본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본 사안 논문은 ████████의 박사논문의 내용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활용함은 물론 최웅이를 학술지 논문의 저자에서 배제하여 저자로서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정함.	
논문(11)		국가 이미지와 의료관광 서비스 품질이 의료관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의료관광객 연령 집단의 조절효과	
게재지	게재 시기	저 자	제보의 내용
관광레저학회	2018 .06	1저자 : ██████████ 2저자 : ██████████ 3저자 : 최승민	-표절, 데이터 조작 -(데이터 조작) 의료관광 서비스 품질 속성이 의료관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국가이미지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18. 3. ██████████우)/관광경영학회 게재)

			논문과 검증 논문 간에 출처표시 없고, 인구통계가 같은데 설문 기간만 20일, 30일로 다름
피조사자의 역할	주저자 ██████████ 박사학위 논문(2018년 6월) 지도교수		
판정결과	상세 의견 종합		
-중복게재	-본 사안 논문은 관광경영연구(2018. 3)에 실린 동일 저자의 선행 연구 내용 중 활용변수, 측정모형 분석,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동일함에도 이에 대해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아 본조사 위원 7인 중 5인은 중복게재(자기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1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1인은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아 다수결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부당한 저자표시	-제보 사항은 아니었지만, 본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제3저자인 최재우의 경우, 본 사안 논문에서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지적 기여에 대한 소명과 관련 근거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아 제3저자로서 기여가 없었으므로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일부는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아 다수결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데이터 조작	-데이터 조작과 관련하여, 동일 저자의 대조 논문(2018. 3, 관광경영학회 논문)과 동일한 데이터(동일한 인구통계)를 사용한 것이 명확함에도 설문조사 시작일을 10일 줄여서 서술한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는 데이터 조작으로 판단됨.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데이터 조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일부는 동일한 인구통계 데이터에 대해 설문 기간을 달리한 것이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소명이 필요하므로 데이터 조작으로 판단하지 않아 다수결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데이터 조작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논문(12)	호텔 조직에서 리더십 스타일이 갈등관리 전략과 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게재지	게재 시기	저 자	제보의 내용
관광경영연구	2016 . 03	1저자 : ██████████ 2저자 : ██████████	-표절 - MICE산업 팀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갈등해결, 몰입 및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탁철, 김포대 박사학위 논문) - 외식업 서비스 팀 구성원의 변혁적 리더십이 갈등해결 유형, 팀 몰입과 팀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한국관광연구학회-관광연구저널 게재, 2016. 02, 김 ██████████)
피조사자의 역할	주저자 ██████████ 의 박사학위 논문(2017년 6월) 지도교수		
판정결과	상세이견 종합		
표절	-본 사안 논문은 피조사자의 지도학생인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2017. 6)을 위해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먼저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학술지 논문에서 탁 ██████████ 의 김포대 박사논문(2015)과 ██████████ 이 학술지 논문(2016. 2,		

		관광연구저널)에 있는 변수, 측정 문항이 동일하고 상당한 부분에서 동일한 표현을 인용하면서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의 것처럼 활용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최종적으로 표절로 판정함.	
논문(13)		관광자의 감각추구 성향과 관광 중독, 지각된 관광 제약의 관계 연구	
게재지	게재 시기	저 자	제보의 내용
관광경영연구	2015 . 07	1저자 : ██████████ 2저자 : ██████████	-중복게재, 데이터 오류 - 여행사 종사자의 조직 공정성 지각에 따른 심리적 자본이 직무소진과 심리적 계약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경영연구, 2015. 03, ██████████)
피조사자의 역할		주저자의 박사학위(2008년) 논문 지도교수 및 논문 심사위원	
판정결과		상세의견 종합	
-단순한 실수로 인한 데이터 오류로 연구부정행위 아님		-본 사안 논문 표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본문에서 기술하는 과정에서 표와 본문 간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고의적인 데이터의 조작이 아니라 단순 실수의 데이터의 기술 오류라고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데이터 단순 오류라고 판단하였고, 일부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데이터 오류라고 판단하여 다수결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함.	
-중복게재 아님		-본 사안 논문은 피조사자 지도학생인 제1저자(██████████)의 박사논문을 재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과정에서 박사학위 논문 내용의 인용 부분에 대한 출처표기가 없었으나 이는 당시의 학계의 인식이나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중복게재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본 사안 논문은 ██████████의 학술지 논문(관광경영연구, 2015. 03)과 방법론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출처표시를 누락한 곳이 일부 있으나 논문 전체적으로는 주제 및 변인 등 중요한 부분에서 선행 연구와 별개의 논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차별화 요소가 있어 중복게재(자기 표절)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제시하였고, 일부는 중복게재라고 판단하여 다수결 원칙에 따라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정함.	
논문(14)		호텔 가격공정성이 브랜드 자산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게재지	게재 시기	저 자	제보의 내용
관광경영연구	2012 . 06	1저자 : ██████████ 2저자 : ██████████ 3저자 : ██████████	-중복률 과다, 데이터 누락 - 호텔 가격 공정성과 구매 의도 연구(박사학위 논문, ██████████ 2008) - (데이터 누락) 2008년 논문을 이용하여 2012 논문 작성한 것으로 보임(출처표기 없고, 인구통계 같음), 2012 논문에 조사 시점 명시

			안 됨(1년으로 표시)-고의 누락 의혹 제기
피조사자의 역할		주저자의 박사학위(2008년 12월) 논문 지도교수 및 논문 심사위원 교신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판정결과		상세의견 종합	
-중복게재 아님		-본 사안의 제보 내용은 중복을 즉, 중복게재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본 사안 논문은 피조사자 지도학생의 박사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한 것으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하지 않았지만 학문 분야의 특성과 당시의 관행을 고려하고 본조사위원회에서 정한 중복게재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일부는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아 다수결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함.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함		-부당한 저자표시와 관련하여, 제보 사항은 아니지만, 본조사위원회의 검증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 사안 논문에서 제2저자이면서 교신저자인 김기범이 교신저자로서 실질적인 지적 기여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타당한 근거나 증빙 자료에 의해 충실하게 소명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최종적으로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데이터의 누락에 해당하지 않음		-데이터의 누락과 관련하여, 본 사안 논문은 2008년 []의 학위 논문의 데이터 수집 관련 서술에 있는 '최근 1년 동안'의 표현을 누락하여 2008년에 수집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마치 2012년에 새롭게 데이터를 수집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함. 즉, 연구 논문에서 조사 시점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본 사항으로 횡단적 연구에서 단순히 '1년'이라는 표현은 연구 결과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오래 전에 수집된 데이터를 시일이 한 참 지난 시점에서 다시 활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의문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애매한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대한 데이터 누락에 해당함. 이는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강하게 연구부정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본 사안의 데이터 누락에 관하여 본조사 위원 7인 중 3인이 적극적으로 판단하였고, 4인은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아 다수결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데이터 누락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함.	
논문(15)		호텔 종사원의 감성역량이 소진과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게재지	게재 시기	저 자	제보의 내용
관광경영연구	2019 . 11	1저자 : 최 []	-중복게재
판정결과		상세의견 종합	
-중복게재에 해당함 -부당한 중복게재 에도 해당함		-본 사안 논문(관광경영연구, 2019. 11)은 피조사자의 선행 연구(2019. 8, Tourism Research)와 데이터 및 통계 그리고 동일 문장이 상당 부분 있음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아 후속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였으므로 중복게재(자기표절)에 해당함.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중복게재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p>로 중복게재로 판정함.</p> <p>-또한 본 사안 논문은 피조사자가 경기대학교 교수로 임용될 당시 연구 실적으로 활용되었는 바, 중복게재된 논문을 업적에 부당하게 활용하여 부당한 중복게재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함.</p>		
-표절에 해당함	<p>-제보 사항은 아니지만, 본 사안 논문은 타인 연구 내용을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피조사자의 것처럼 하고 있는 부분도 본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표절인 부분도 있음. 피조사자도 서면 소명에서 본 사안 논문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연구되어 이론적 배경의 내용이 유사하고 설문 대상자가 일치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특성이 일부 일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p>		
논문(16)		관광 관련 전공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영어 학습 동기가 학습몰입 및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	
게재지	게재 시기	저 자	제보의 내용
Tourism Research	2018 . 9	1저자 : ██████████ 2저자 : ██████████	-중복게재
피조사자의 역할		1저자 ██████████ 박사학위(2018년 2월) 논문 지도교수	
판정결과		상세의견 종합	
-중복게재 아님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함)		<p>-피조사자 지도학생의 박사논문의 상당 부분을 학술지 논문에서 재활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출처나 참고문헌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논문에서 재활용할 때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당시 학계에서 통용되지 않았음을 고려한 본조사위원회의 중복게재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볼 때,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일부는 중복게재라고 판단하여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지만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함.</p>	
논문(17)		교육서비스 품질이 학습참여 및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게재지	게재 시기	저 자	제보의 내용
관광경영연구	2018 . 9	1저자 : ██████████ 2저자 : ██████████	-중복게재 -임용시 제출업적
피조사자의 역할		1저자 ██████████ 박사학위(2018년 11월 제출, 2019년 2월 확정) 논문 지도교수	
판정결과		상세의견 종합	
-중복게재 아님		<p>-본 사안 논문은 피조사자의 박사과정 지도학생인 ██████████의 박사학위 논문(2019. 2)보다 먼저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피조사자의 소명처럼 장몽요의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술지 게재 논문보다 앞서 발표된 것이므로 박사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중복게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중복게재가 아님으로 판단함에 따라 최종적으로</p>	

		중복게재 아님으로 판정함	
-표절에 해당함		-제보 사항은 아니지만, 본 사안 논문은 이 ██████████(2015)의 논문과 비교할 때, 출처 표시가 필요한 부분에 정확하게 하지 않아 피조사자의 것처럼 하고 있으므로 표절에 해당함.	
<u>논문(18)</u>		호텔 종사원이 지각하는 고용 불안정성이 이직 의도와 조직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u>게재지</u>	<u>게재 시기</u>	<u>저 자</u>	<u>제보의 내용</u>
Tourism Research	2018 .12	1저자 ██████████ 2저자 ██████████ 3저자 ██████████ (초당대교수)	-중복게재, 1저자 표시 의심
피조사자의 역할		교신저자 ██████████의 박사학위 논문(2017년 5월 청구, 2017년 8월 완료) 지도교수	
<u>판정결과</u>		<u>상세의견 종합</u>	
-중복게재 -부당한 중복게재		-본 사안 논문은 제2저자(교신저자)의 박사학위 논문(2017. 8)을 재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한 것으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출처표기가 없지만,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중복게재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동일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된 ██████████의 선행 연구(2018. 5)와 유사한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아 본 사안 논문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중복게재라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중복게재로 판정함. -또한 본 사안 논문은 중복게재된 논문을 경기대학교 임용 당시 연구 업적물로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함.	
-부당한 저자표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면, 지도학생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부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할 때, 지도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 저자 또는 교신 저자로 등재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할 수 없으나, 본 사안의 경우 지도교수가 제1저자, 제3자인 3저자가 공동저자로 등재되었고 이 두 사람이 저자로서 실질적인 지적 기여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u>논문(19)</u>		카지노 방문 동기가 카지노 선택 속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와 IPA를 활용한 카지노 선택 속성의 차이 연구	
<u>게재지</u>	<u>게재 시기</u>	<u>저 자</u>	<u>제보의 내용</u>
Tourism Research	2018 . 9	1저자 ██████████ 2저자 ██████████	-중복게재
피조사자의 역할		주저자 ██████████의 박사학위 논문(2017년 8월 완료) 지도교수	

<u>판정결과</u>		<u>상세의견 종합</u>	
-중복게재 아님		<p>-박사과정 지도학생의 박사학위 논문(2017. 8)을 재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한 것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재활용하였다는 출처표시가 없지만,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당시 학계에서 통용되지 않았음을 고려한 본조사위원회의 중복게재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볼 때,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판정함.</p> <p>-또한 지도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인 피조사자가 제2저자(교신저자)로 등재된 것은 교육부 및 경기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에 의거할 때,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지 않음.</p>	
<u>논문(20)</u>		호텔 종사원의 성취목표 지향성과 경력 몰입의 관계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매개효과	
<u>게재지</u>	<u>게재 시기</u>	<u>저 자</u>	<u>제보의 내용</u>
관광경영연구	2018 .05	1저자 : ██████████ 2저자 : ██████████ 3저자 : ██████████	-중복게재
피조사자의 역할		1저자 L ██████████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3저자 W ██████████학위(2019년 8월) 논문 지도교수	
<u>판정결과</u>		<u>상세의견 종합</u>	
-중복게재 아님		<p>-본 사안 논문은 지도학생의 박사학위 논문(2018. 2)을 재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한 것으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출처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당시 학계에서 통용되지 않았음을 고려한 본조사위원회의 중복게재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볼 때,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중복게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판정함.</p> <p>또한 비교 논문인 유효강·최우성(Tourism Research 42(3), 2017)과는 변수가 동일하나 연구 대상이나 조사 일시 등이 차이가 있어 중복게재라 볼 수 없음.</p>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함		<p>-제3저자인 ██████████이 본 사안 논문에서 제3저자로서 실질적인 지적 기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 있는 타당한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저자로서 실질적인 지적 기여가 없는 사람을 공동 저자로 등재하였는 바, 본 조사위원 7인 중 5인이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판단하였고, 2인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정함.</p>	

논문(21)		취업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	
게재지	게재 시기	저 자	제보의 내용
Tourism Research	2017 .06	1저자 : ██████████ 2저자 : ██████████ 3저자 : ██████████ 4저자 : ██████████	-중복게재
피조사자의 역할		주저자의 박사학위(2016년 10월 청구, 2017년 2월 확정) 논문 지도교수 3저자의 박사학위(2017년 8월) 논문 지도교수	
판정결과		상세 의견 종합	
-중복게재 -부당한 중복게재		<p>-본 사안 논문은 지도학생의 박사학위 논문(2017. 2)을 재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한 것으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출처표시가 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중복게재라고 판단할 수 없음. 그러나 동일한 박사학위 논문을 재활용하여 2개의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면서, 선행 연구(██████████, 관광경영연구, 2017. 5)의 통계자료와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적절하게 출처표시를 하지 않아 본 사안 논문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한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됨. 피조사자는 소명을 통해 동일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3편의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였고, 각각 박사학위 논문을 재활용하였다고 포괄적인 출처표시를 했으므로 중복게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비슷한 시기에 나온 피조사자의 학술지 논문 간의 중복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출처표시가 없는 것은 중복게재 해당한다고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최종적으로 판정함.</p> <p>-그리고 중복게재를 한 본 사안 논문을 경기대 임용 당시 연구 실적물로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함.</p>	
-부당한 저자표시		<p>-본 사안 논문에 제3저자 및 제4저자가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하여 피조사자는 설득력 있는 증거물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저자로서 실질적인 지적 기여가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저자로서 기여가 없는 사람을 저자로 등재한 것이므로 본조사 위원 7인 중 5인이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2인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다수결 원칙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정함.</p>	
논문(22)		호텔 종사원이 지각하는 네트워킹 행동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원의 조절 효과에 관한 연구	
게재지	게재 시기	저 자	제보의 내용
Tourism Research	2020 .12	1저자 : 최█████████	-중복게재
판정결과		상세 의견 종합	
-중복게재 아님		<p>-본 사안 논문과 동일한 시기인 2020년 12월에 관광경영학회에 게재된 피조사자의 논문 간에는 동일한 데이터가 사용되었음에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으나</p>	

(연구부적절행위)		분석 대상의 주요 변인이 다르므로 엄격하게 중복게재로 보기보다는 선행 연구에 대한 출처표시를 누락한 연구부적절 행위로 판단함.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중복게재가 아님으로, 일부는 중복게재로 판단하여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중복게재가 아닌 연구부적절행위로 판정함.	
논문(23)		COVID-19에 의한 관광산업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게재지	게재 시기	저 자	제보의 내용
관광경영 연구	2020 .05	1저자: 최 [redacted] 2저자: [redacted] 3저자: [redacted]	-부당한 저자표시 (제자인 중국 유학생 주위 동의 없이 주저자로 게재)
피조사자의 역할		[redacted]가 수강한 과목의 강의 교수	
판정결과		상세의견 종합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함		<p>-피조사자의 소명에 의하면, 피조사자가 강의한 과목에서 제2저자와 제3저자가 제출한 리포트의 내용이 좋아 학술지 논문 게재를 제안하였고 이에 피조사자는 제출된 리포트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적인 논문 구성 및 보완을 통해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였다고 함. 피조사자의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리포트와 학술지 게재 논문 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어 피조사자가 제1저자로서 고유하고도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피조사자의 제1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지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음. 따라서 본조사위원 절대 다수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정함.</p> <p>-제3저자인 [redacted] 유학생 [redacted]는 본 사안 관련하여 뉴스타파와의 인터뷰 시, 피조사자가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이 제출한 리포트를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였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서면 소명을 통해 피조사자가 자신의 리포트를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을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는 피조사자의 영향을 받아 사실과 달리 번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뢰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위 학생의 진술 및 피조사자의 진술을 근거로 저자표시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제출이 충분하지 않았음.</p>	
논문(24)		크루즈관광객의 선상 이벤트 참가 동기가 정서적 관여도와 고객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게재지	게재 시기	저 자	제보의 내용
관광경영 연구	2018 . 09	1저자 : [redacted] 2저자 : [redacted]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피조사자의 역할		교신저자(피조사자는 논문 심사에 관여하지 않음)	

판정결과		상세의견 종합	
-중복게재 아님		<p>-본 사안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2017. 2)을 수정 및 보완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한 것으로 피조사자는 당시 지도교수도 아니었고, 박사논문 심사 에 관여하지도 않았음. 다만 제1저자가 2018년 8월 제주 국제 크루즈 포럼에서 발표한 논문을 활용 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자는 제안을 하자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는 투고 준비 및 심사위원과의 교신을 담당 했다고 소명함.</p> <p>-일반적으로 학위 논문의 재활용,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공식적인 출판물로 보 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를 재활용하여 전문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할 때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고해서 엄격하게 중복게재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본 사안 논문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중복게재가 아니라 고 최종적으로 판정하였음.</p>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		<p>-그러나 피조사자가 교신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하여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 학술대회 발표문 ->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들이 거의 동일하고 박사학위 논문의 단순한 요약에 해당하며(박사학 위 논문 4개의 변수 중 하나를 제외한 3개는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어 피조사 자가 추가적으로 독자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은 없음), 박사 학위 논문에서 학술대회 발표문 작성을 제1저자가 주로 했으므로 피조사자가 학술지 게재 논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자로서 실질적인 지적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움(피조사자의 교신저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도 구체적 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게 제출되지 않았음). 따라서 저자로서 기여 가 없는 피조사자를 제2저자(교신저자)로 등재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 당한다고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동의하여 최종적으로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 당한다고 판정함.</p>	
논문(25)		인바운드 의료관광 추세와 대응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중국인 중심으로	
게재지	게재 시기	저 자	제보의 내용
관광경영 연구	2020 .11	1저자 : ██████████ 2저자 : ██████████	-부당한 저자표시 -자기표절
피조사자의 역할		██████████의 논문지도교수 아님, (석사 논문 심사과정에 관여하지 않음)	
판정결과		상세의견 종합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지 않음		<p>-피조사자의 소명을 종합해 볼 때, 피조사자가 제2저자 및 교신 저자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부당한 저자표시가 아니라고 판정함.</p>	
-표절에 해당함		<p>-제보자는 자기표절에 대하여 제보를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무엇과 비교하여 자 기표절인지에 대하여 검증하도록 특정화하지 않았으므로 제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검증 대상에서 제외함.</p> <p>-본 사안 논문은 비교 대상 논문인 루현연(2018)에서 15개 문장, 장안(2020. 2)</p>	

	에서 22개 문장 등 57개 문장에서 출처표시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타인의 연구 내용을 피조사자의 것처럼 하여 표절로 판단함. 본조사 위원 절대 다수가 표절이라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표절로 판정함.
--	--

나. 조사 결과 상세 내역 : 피조사자별 논문별 종합판정 내역

피조사자	조사대상논문	종합판정결과	연구부정 해당여부
[REDACTED]	여수엑스포장의 대기 시간이 방문객 감정반응과 개최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중복게재 아님	해당없음
	관광이벤트 종사자의 성격이 직업만족 및 경력변경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복게재 아님	해당없음
	대학축제의 진단과 대안모색	연구부정행위 아님	해당없음
	전시박람회 서비스 스케이프와 감정 반응간의 관계 연구 :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복게재 아님 부당한저자표시 아님	해당없음
[REDACTED]	모바일 관광 목적지 관광 정보에 신뢰성이 관광 목적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 목적지 이미지와 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데이터 조작	해당
		부당한 저자표시	해당
[REDACTED]	항공서비스 전공학생의 전공 선택 동기가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및 취업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복게재(자기표절)	해당
		부당한 저자표시	해당
	게스트하우스 인프라 확충 연구 : 건축적 특성을 중심으로	부당한 저자표시	해당
	중국 크루즈 관광객 기항지 쇼핑 속성이 쇼핑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쇼핑 동기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부당한 저자표시	해당
		중복게재(자기표절)	아님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 변화에 따른 여행사 전략 연구-도매 여행사를 중심으로	부당한 저자표시	해당
중복게재(자기표절)		아님	
[REDACTED]	호텔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공중 관계성과 호텔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표절	해당
		부당한 저자표시	해당
	국가이미지와 의료관광서비스품질이 의료관광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료관광객 연령집단의 조절효과	중복게재	해당
		부당한 저자표시	해당
호텔조직에서 리더십 스타일이 갈등관리 전략과 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조작	해당	
	표절	해당	

	관광자의 감각추구 성향과 관광 중독, 지각된 관광 제약의 관계 연구	단순한 실수로 인한 데이터 오류로 연구부정행위 아님 중복게재 아님	해당없음
	호텔 가격공정성이 브랜드 자산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복게재 아님	해당없음
부당한 저자표시		해당	
데이터 누락 아님		해당없음	
■	호텔 종사원의 감성역량이 소진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복게재, 부당한 중복게재	해당
		표절	해당
	관광관련 전공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영어 학습 동기가 학습몰입 및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복게재 아님	해당없음
	교육서비스 품질이 학습참여 및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중복게재 아님	해당없음
		표절	해당
	호텔종사원이 지각하는 고용 불안정성이 이직 의도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중복게재, 부당한 중복게재	해당
		부당한 저자표시	해당
	카지노 방문동기가 카지노 선택 속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IPA를 활용한 카지노 선택 속성의 차이 연구	중복게재 아님	해당없음
	호텔 종사원의 성취목표지향성과 경력몰입의 관계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매개효과	중복게재 아님	일부해당
		부당한 저자표시	해당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중복게재, 부당한 중복게재	해당	
	부당한 저자표시	해당	
호텔종사원이 지각하는 네트워킹 행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중복게재 아님	해당없음	
■	COVID-19에 의한 관광산업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부당한 저자표시	해당
	크루즈관광객의 선상 이벤트 참가 동기가 정서적 관여도와 고객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복게재 아님	해당없음
		부당한 저자표시	해당
	인바운드 의료관광 추세와 대응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중국인 중심으로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없음
		표절	해당

6. 차후 진행 방향

- 가. 관련 당사자에게 결과보고서 내역 통보 : 피조사자(6명), 제보자(뉴스타파)
- 나. 관련 당사자가 이의신청서 제출(30일 이내)시 접수
- 다. 이의신청서 접수시 60일 이내 처리
- 라. 이의신청서에 의한 처리까지 완료시 경기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17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의거하여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

2023. 01. 26 .

경 기 대 학 교 연 구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